

[거창군관리계획(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안의견제시의견]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3. 11.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11. 14.

다. 상정일자 : 2003. 11. 24.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라. 의안번호 : 제 2003 - 56호

2. 제안사유

- 거창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제1종 지구단위 계획) 중 근계획시설인 도서관 시설부지가 부정형으로서 건축물 미관 증진과 토지 이용을 제고 등 사업효과 증진을 위하여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여
- 공원면적 증감 없이 남쪽방향으로 11.2m 정도 수평이동 하는 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골자

- 근린공원1호 중 도서관부지와 주차장 부지간 일부 교환 (교환면적 504m²) ※ 도시계획시설 용도간 면적 증감 없음

4. 변경안에 대한 의견:

- 거창 군관리계획 (상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변경 안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 및 군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도서관 신축시 건축물 미관 증진을 위해 주차장 부지와 면적 증감없이 남쪽방향으로 11.2m 정도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